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⑩ 적용환율： )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⑩ 적용환율：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71 Ⅰ. 미처리결손금 8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72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4 2.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73 2.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 85 3. 중간배당액 74 3. 중간배당액 86 4.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75 4.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87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76 Ⅱ. 결손금 처리액 88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77 1. 임의적립금 이입액 89 1. 현금배당 78 2. 그 밖의 법정적립금이입액 90 2. 주식배당 79 3. 이익준비금 이입액 91 3. 의무적립금 80 4. 자본잉여금 이입액 92 4. 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상여 등 81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93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자 모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1억원 이상의 외화환산은 각 투자실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1. 국내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국내 모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며 가결산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결산의 [ ]에 √ 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 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 적용환율에, 요약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미 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4.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상의 ‘특수관계인’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국내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 → 현금과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 → 대여금 등)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 분류과목 이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투자유가증권｣에 적습니다. (예：지분법적용해외투자주식 → 투자유가증권) 7.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별지 제3호의3서식(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